

K SOX Audit 1st Year Review*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법제도 및 감사(검토) 결과 비교분석

Vol. 2



삼성KPMG K SOX 전문조직

December 2020

*2020년 1월 Preview가 발간되었으며 향후 매년 양국의 제도와 현황을 비교하는 보고서 출간 예정



목차

0. Executive Summary	2
1.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도 비교	3
2.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추이	6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8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20
[별첨1] 비적정 의견 사유 전체	36
[별첨2] ‘검토’와 ‘감사’의 차이	38
[별첨3]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부정 사례	39
[별첨4] 미국 소규모 기업에 대한 ICFR 감독 완화 동향	41

*ICFR이란?

미국의 Sarbanes-Oxley Act(2002, 이하 ‘SOX법’)에서 규정하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 내부통제)’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에 준함

*K SOX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국의 SOX법에 따른 ICFR에 비유하여, Korea를 의미하는 ‘K’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하는 ‘SOX’를 결합한 단어

0. Executive Summary



국내와 미국 간 비적정 의견 사유의 분포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감사 첫 해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비중은 미국 15.9%, 국내 2.4%인데, 미국은 수 년에 걸쳐 동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감독 강화 이후 동 비중 증가
- 국내의 경우 외부감사 강화와 감독 범위의 확대로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증가가 예상됨
-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중 ‘범위 제한’^(주1)이 가장 높은 비중 (32.6%)인 반면, 미국에서는 동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거의 없었음
- 미국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이 비적정 의견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는 동 비중이 현저히 낮음



비적정 의견 사유 중 한국은 ‘범위 제한’, 미국은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대폭 증가

- 2018년 대비 2019년에 국내에서는 ‘범위 제한’의 비중이 10%p 증가
 - » 감사제도 도입 등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전반적인 외부감사인의 업무 강도 강화에 기인함
- 2018년 대비 2019년에 미국에서는 ‘정보기술(IT) 통제 미흡’의 비중이 사유 개수 기준으로는 4.7%p, 기업 수 기준으로는 14.5%p 상승
 - » IT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접근 권한 통제나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



재무제표 작성능력으로 인한 비적정 의견 사유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2019년 국내 기업의 비적정 의견 사유 중 재무제표 작성능력과 관련된 사유는 42.8%(138개 중 59개), 미국은 54.6%(557개 중 304개)로 나타남
-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재무제표 및 경영진 검토통제(MRC)^(주2) 감독에 대한 통제를 별도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며, CFO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처리규정 또한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함



감사(위원회) 산하 내부감사부서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적극 고려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부서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미국은 주요 기업의 81%에서,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
- 내부감사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직접 보고해야 하고, 내부감사책임자 임면권 및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권 등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해야 함

■ (주1) ‘범위 제한’은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주2) Management Review Control: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아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통제

1.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도 비교

(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 도입 당시에는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였으나 新외부감사법(2018.11 시행)에 따라 2019년 사업연도부터 상장법인 자산규모별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단계적으로 적용^(주3)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음



-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하 ‘SOX법’) 제정(2002)을 통해 ICFR^(주4) 평가를 도입한 직후인 200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외부감사인 감사(Attestation)를 의무화 함

[표1]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미국의 ICFR에 대한 감사 도입

구분	한국	미국
근거 법령	외부감사법 §8.6, 부칙 §3	SOX법 §404.(b)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 적용 사업연도	적용 대상	적용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19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2020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2022년
	상장법인 전체	2023년
		2004년~ (Public Float ^(주5) 가 \$7,500만 이상인 기업)

■ (주3)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도입 당시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감사’로 상향할 때에도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함

(주4)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재무보고 내부통제)’을 의미하며,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에 준함

(주5) 공개적으로 발행되어 일반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시가총액에 준하는 개념이나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을 의미

1.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도 비교 (계속)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계속)

- 국내에는 1997년 IMF 이후 2001년 8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국에는 엔론과 월드컴 파산 이후 2002년 7월부터 ICFR이 도입됨
- » 그러나,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때부터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본격적으로 규제해 옴
- » 뿐만 아니라 미국은 검토가 아닌 감사(Attestation) 제도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바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ICFR에 대한 감사 시행 17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그림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연혁



■ (주6)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미국 기업에 대해 수행된 외부감사의 품질과 적정성을 감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비영리기관

(주7)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1985년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가 미국에서 공동 설립한 조직

(주8)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사의 준거기준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으로 구성.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통칭함

1.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도 비교 (계속)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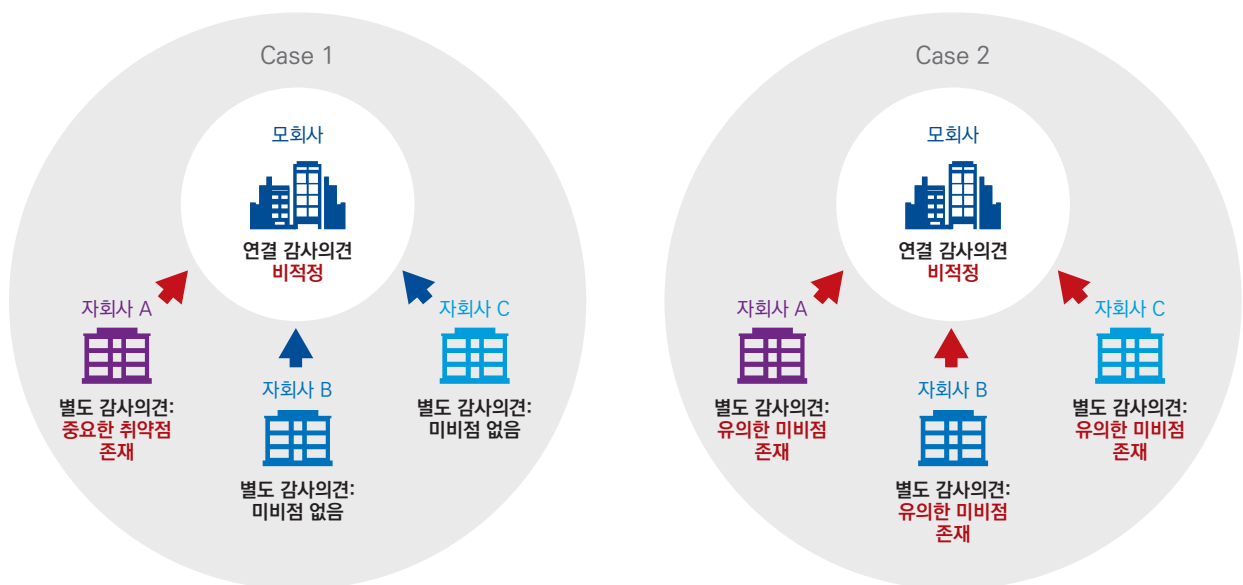
-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모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 모회사와 그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 미국은 2004년 최초 시행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 ICFR 감사였음

[표2] 한국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

적용 대상	적용 사업연도
모회사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22년
모회사 별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	2023년
상장법인 전체	2024년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됨
 - » 모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의 책임 확대: 주주총회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확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비용, 시간 추가 소요
 -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가능성 증가: 자회사의 중대한 취약점이나 다수 자회사의 유의한 미비점으로 인해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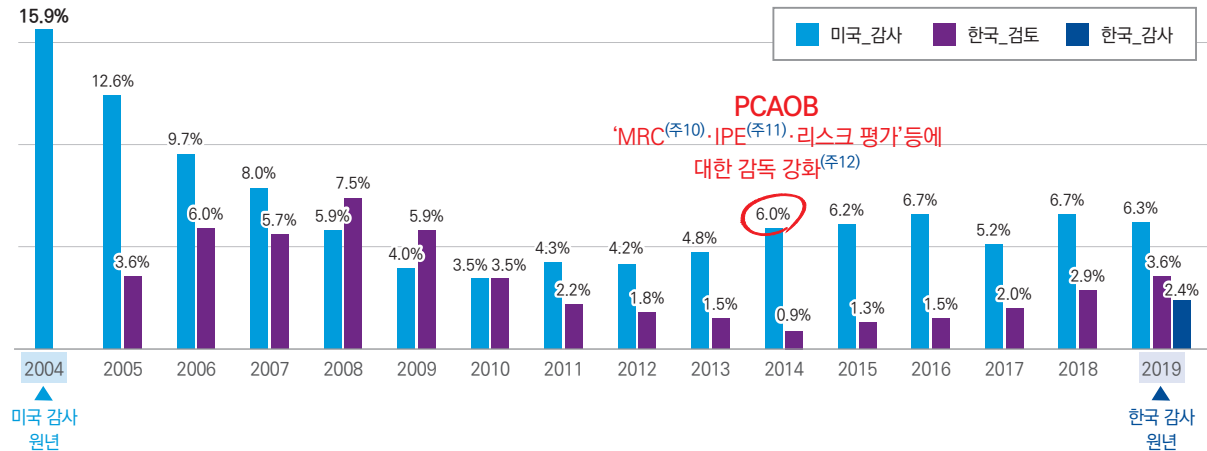
[그림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 자회사의 중대한 취약점 또는 유의한 미비점이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



2.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추이

(1) 감사(검토) 도입 이래 시계열 추이

[그림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기업 비중^(주9) ※ 기업 수 기준



- 미국은 감사 첫 해 15.9%의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국내는 감사 첫 해 2.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13년 PCAOB(주13)의 감독 강화 이후 비적정 의견 비중이 증가하였음
- 2015년 말 SEC(주14)는 ICFR 평가에 있어 경영진-외부감사인-감사위원회 간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



- 국내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이 최근 수 년 간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향후에도 동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외부감사 업무 강도 상향에 따라 비적정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감사 도입 초기 계도 기조에서 점진적으로 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주9)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기업 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_감사	454	492	417	363	268	169	141	174	165	188	236	239	247	190	243	227
한국_검토	-	57	99	97	130	102	62	39	31	27	18	25	28	38	56	71
한국_감사	-	-	-	-	-	-	-	-	-	-	-	-	-	-	-	4

(주10) Management Review Control: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아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통제

(주11)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 내부통제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주12) PCAOB,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Considerations for Audits of ICFR", 2013.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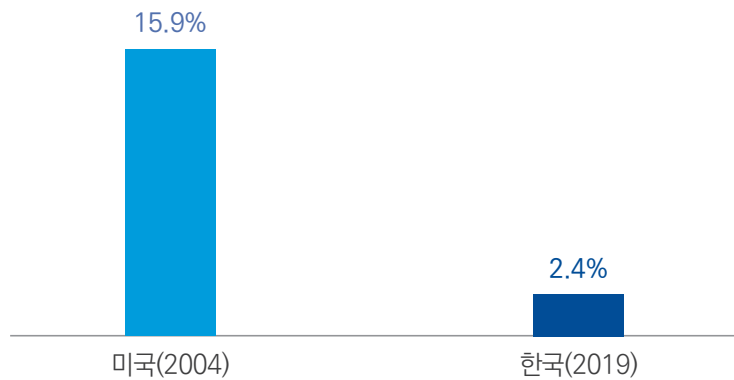
(주13)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미국 기업에 대해 수행된 외부감사의 품질과 적정성을 감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비영리기관

(주14)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추이 (계속)

(2) 미국 감사 원년(2004) vs. 한국 감사 원년(2019)

[그림4] 韓美 감사 원년 비적정 의견 기업 비중 ※ 기업 수 기준



- 감사 원년 미국에서 ICFR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15.9%)이 국내 감사 원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 비중(2.4%)보다 확연히 높은 이유는 다음 [표3]에 기술된 원인에 기인함

[표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당시 韓美 차이

구분	한국	미국
감사 도입 사업연도	2019년	2004년
도입 사업연도의 감사 대상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도입 사업연도의 감사 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한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중견기업 포함 (Public Float ^(주15) 가 \$7,500만 이상인 기업) ^(주16)
도입 당시 감독 기조	계도 중심의 감독	엔론, 월드컴 등 대형 분식 사건 발생 직후로서 철저한 감독 및 감사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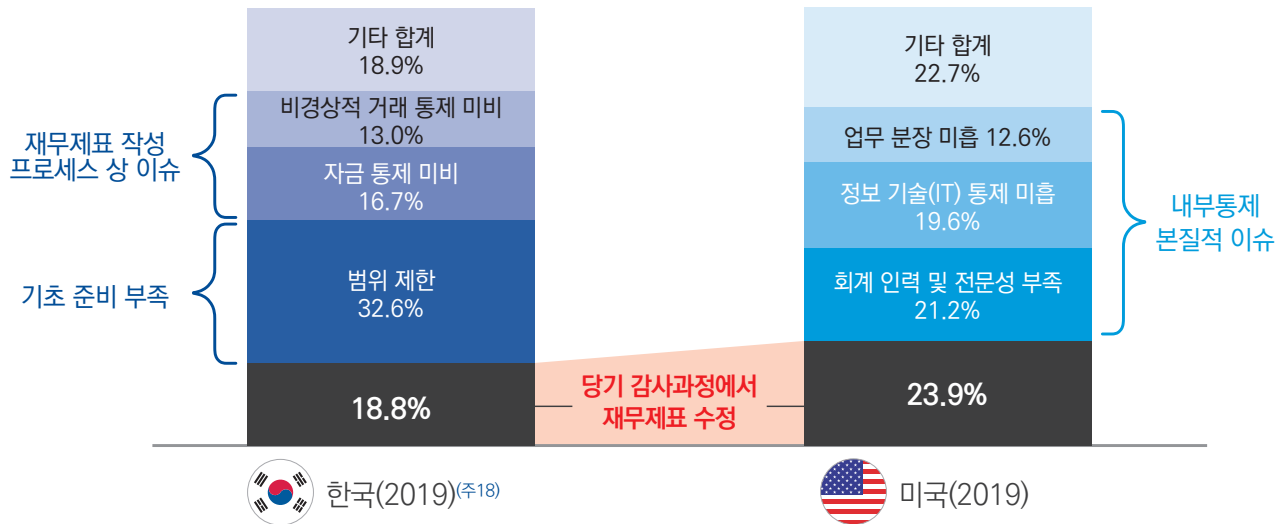
■ (주15) 공개적으로 발행되어 일반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시가총액에 준하는 개념이나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을 의미

(주16) Public Float \$7,500만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은 2007년부터 ICFR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만 수행되어 왔고 Public Float \$7,500만 이상의 기업들은 2004년부터 경영진의 평가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도 받아옴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1) Korea vs. US in 2019

[그림5]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상위 4개 및 기타 합계 비중: 한국(2019) vs. 미국(2019)^(주17) ※ 사유 개수 기준



(공통점)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한국 18.8%(2위), 미국 23.9%(1위)로 양국에서 모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원인1) 외부감사인에게 최초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에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은 재무보고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한 데 기인함
- (원인2)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다른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으므로^(주19), 복수의 사유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차이점은 다음 페이지에...

■ (주17)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한국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주18) 한국과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기업들의 비적정 의견 사유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조사 대상 기업이 미국은 모두 감사 대상이나, 국내의 경우 2019년 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7개사에 한정되고 이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4개사에 불과하므로 국내 기업 분석에는 검토 대상까지 포함

(주19) 예: 비경상적 거래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여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기 감사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함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1) Korea vs. US in 2019 (계속)

(차이점 1) 국내에서는 주로 재무제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이 지적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재무보고의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내부통제 환경의 미비점에 초점

- (부연 설명)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이 비적정 감사의견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는 동 비중이 현저히 낮음 ([표4] 참고)
- (원인) 미국은 감사제도가 장기간 운영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감사 시 내부통제의 결과물(재무제표)보다는 그 결과물이 산출되는 절차, 결과물에 관여하는 담당자 등 더 근본적인 원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됨

[표4] 재무보고 취약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vs. 미국 in 2019^(주20)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118	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9	19.6%
업무 분장 미흡	0	0%	70	12.6%
부분 합계	7	5.1%	297	53.3%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차이점 2) 2019년 사업연도에 국내의 비적정 의견 사유 중에서는 ‘범위 제한’^(주21)이 가장 높은 비중 (32.6%)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동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없음

- (부연 설명) 미국은 감사 원년 2004년에도 ‘범위 제한’으로 인한 비적정 의견 사유의 비중이 1.8%에 불과하였음
- (원인1) 국내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제외한 기업들은 감사가 아닌 검토 대상이었고, 이러한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거나 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기본적인 설계·평가·보고 체계가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주22)
- (원인2) 감사제도 도입 등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외부감사인의 업무 강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함

■ (주20)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한국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주21) ‘범위 제한’은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주22) 그러나 감사 대상 기업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4개사 중에서도 2개사가 ‘범위 제한’이 비적정 의견 사유로 지적되어(해당 기업들의 유일한 사유는 아님) 검토와 감사에 따른 차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1) Korea vs. US in 2019 (계속)

(차이점 3) 미국의 경우 ‘자금 통제 미비’,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가 비적정 의견 사유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9%, 3.1%인 반면, 국내에서는 각각 16.7%, 13%로 훨씬 더 높음

- (원인1) 국내 기업은 개인 최대주주와 그 친인척이 주요주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개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미국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남
- (원인2) 덧붙여, 국내의 경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 손상평가와 관련된 통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음

[표5] ‘자금 통제 미비’,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vs. 미국 in 2019^(주23)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자금 통제 미비	23	16.7%	5	0.9%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17	3.1%
부분 합계	41	29.7%	22	3.9%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 (주23)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한국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1) Korea vs. US in 2019 (계속)

양국의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 사례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회사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이 감사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동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범위 제한

- (사례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들은 모범규준에 따른 문서화로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검토절차를 충분하게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 (사례2)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관련 자료 미제출, 회계기록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금 통제 미비

일부 중요한 투자와 관련한 자금거래에서 이사회이사록 기록과 유지에 대한 내부통제와 자금지출 관련한 내부승인절차의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 (사례1) 중요한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평가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내부통제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례2) 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비금융자산 손상 검사와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가 미비합니다.



(주24)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GAAP^(주25)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재무보고 및 회계 분야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전문성은 (i) 미국 GAAP상 복잡한 회계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기말 재무보고 정책 및 절차를 설계 및 적용하는 것, (ii) 미국 GAAP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정한 재무보고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연결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작성 및 검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2019년 사업연도 2분기에 당사는 재무보고 절차와 관련된 특정 IT 시스템으로의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나 변경을 예방·탐지하는 통제의 결함을 발견하였다. 이 결함 있는 통제의 영향 하에 있는 IT 시스템에서 정보가 생성되며, 이러한 정보에 의존하는 여타 수동/자동 통제 또한 비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무 분장 미흡

4분기에 회계 인력 및 감독 인력의 불충분으로 인해 회계 및 재무부서 내 업무 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특히 자금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 거래의 개시, 자산의 관리, 거래의 기록은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흡한 업무 분장이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영진이 평가한 결과, 연결 재무제표상 중요한 오류와 재작성을 야기할 수 있어, 이 통제 미비점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었다.

■ (주24) 국문으로 번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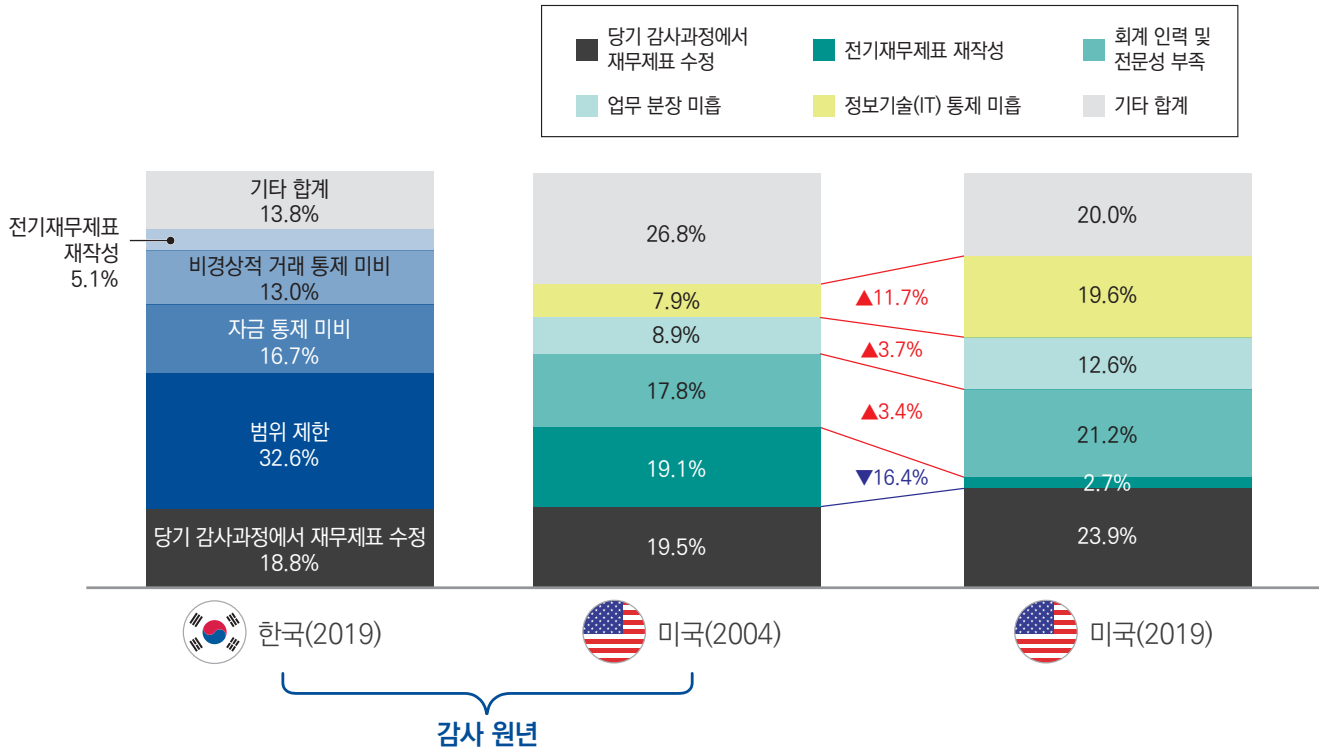
(주25)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2) Korea(2019) vs. US(2004): 1st Year of Audit

[그림6]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 비중: 한국(2019) vs. 미국(2004) vs. 미국(2019)^(주26)

※ 사유 개수 기준



(감사 원년 Korea vs. US 차이점) 한국은 '범위 제한'^(주27)이 가장 높은 비중(32.6%)이나, 미국은 2004년에 '범위 제한' 비중이 1.8%에 불과하였고 감사 원년부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7.8%), '업무 분장 미흡'(8.9%)과 같은 내부통제의 본질과 관련된 사유의 비중이 높았음

- (원인1)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당시 인증 수준이 '검토'였으나 미국은 처음부터 '감사'였기에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담당부서 역할 정립, 인력 확충 등 철저한 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영진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이나 평가보고서 미제출과 같이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감사 원년 2004년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 (원인2) 미국은 2004년 이전부터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ICFR 감사가 시행되었고, 이에 '특정 통제가 미비하다'와 같은 결과 보다는 재무보고의 과정에 초점을 둔 감사의견 피력이 가능

■ (주26)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한국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주27) '범위 제한'은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2) Korea(2019) vs. US(2004): 1st Year of Audit (계속)

(감사 원년 미국의 특징) 감사 원년 한국이나 2019년 미국과 비교했을 때, 2004년 미국은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이 매우 많았음

- (부연 설명)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비적정 의견 사유의 비중은 2019년 한국 5.1%, 2019년 미국 2.7% 인데 2004년 미국에서는 무려 19.1%에 달함^(주28)
- (원인1) 국내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감독당국이 제도 중심의 감독 기조를 표방한 반면, 미국은 대형 회계분식 사건 발생으로 인해 2004년 당시 철저한 감독 및 감사를 추구하였음
- (원인2) 미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됨 (한국: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미국: Public Float^(주29)가 \$7,500만 이상인 기업))
- (원인3) 2019년 감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인 국내와 달리 미국은 2004년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었음

[표6]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2019) vs. 미국(2004) vs. 미국(2019)^(주30)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04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255	19.1%	15	2.7%
(생략)						
합계	138	100%	1,336	100%	557	100%

(감사기구 관련 사유) 미국에서는 국내에 비해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기능과 관련된 비적정 의견 사유가 다양하게 발견됨

[표7]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2019) vs. 미국(2004)^(주31)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04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11	0.8%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12	0.9%
부분 합계	1	0.7%	23	1.7%
(생략)				
합계	138	100%	1,336	100%

실제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

■ (주28) 미국에서 2004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수가 454개사이므로 비적정 의견 사유 개수 기준이 아닌 기업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이 있었던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56.2%에 달함

(주29) 공개적으로 발행되어 일반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시가총액에 준하는 개념이나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을 의미

(주30) [별첨1]에서 전체 사유 확인 가능, 한국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주31) 상동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2) Korea(2019) vs. US(2004): 1st Year of Audit (계속)

감사기구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사례



사후적, 결과 중심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상근감사가 회사의 회계부정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주32)

사전적, 과정 중심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 감사위원 중 재무전문가의 퇴임으로 외부 재무보고 및 ICFR의 비효과적 운영 초래
-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미설치
- 감사위원회로의 부정 보고 시스템 미비
- 감사위원회 회의시간 기록 미흡
- 감사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검토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 미흡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 적절한 수준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사인력의 부족
- 내부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가 아닌 CFO에 보고하여 독립성 및 객관성 저해
- 내부감사부서의 리스크 평가 절차, 감사계획 이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 일상적인 내부감사업무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경영진의 ICFR 효과성 평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부감사인력 부족
- 내부감사기능의 역할(재무보고·준법·운영통제에 대한 검토,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등)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 (주32) 국문으로 번역함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3) 2019 vs. 2018 of Korea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표8] 한국 2019년 전년대비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주33)		한국, 2018		증감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45	32.6%	21	22.6%	▲24	▲10.0%p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14	15.1%	▲12	▲3.7%p
자금 통제 미비	23	16.7%	21	22.6%	▲2	▼5.9%p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9	9.7%	▲9	▲3.3%p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9	9.7%	▼2	▼4.6%p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2	2.2%	▲5	▲2.9%p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5	3.6%	8	8.6%	▼3	▼5.0%p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3	2.2%	3	3.2%	-	▼1.0%p
법규 준수 미비	2	1.4%	0	0%	▲2	▲1.4%p
분개 통제 미비	1	0.7%	0	0%	▲1	▲0.7%p
감사위원회의 비효율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0	0%	▲1	▲0.7%p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	1.1%	▼1	▼1.1%p
업무 분장 미흡	0	0%	2	2.2%	▼2	▼2.2%p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3	3.2%	▼3	▼3.2%p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0	0%	-	-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0	0%	0	0%	-	-
합계	138	100%	93	100%	▲45	-

(가장 많이 증가한 비적정 의견 사유) 2018년 대비 2019년에 국내에서는 ‘범위 제한’의 비중이 10%p 증가

- (원인) 2019년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원년인데, 이로 인해 검토 대상인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감소한 비적정 의견 사유)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은 전년 대비 4.6%p 감소

- (부연 설명) 기업들이 우려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원년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원인) 2020년 초부터 감독당국은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조율 절차 지원 등)을 공표하고 제도 중심의 감독을 추구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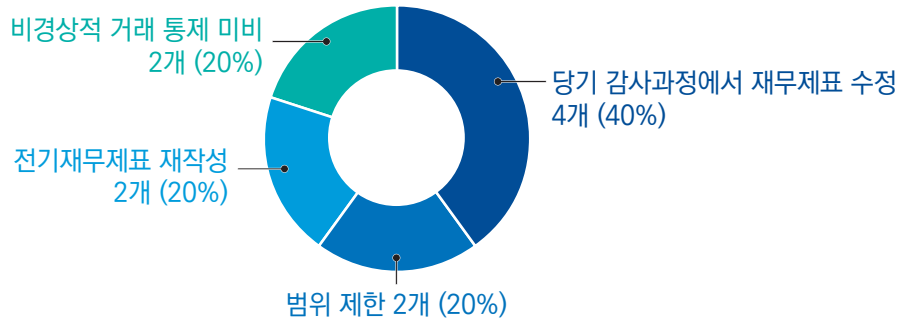
■ (주33) 2019년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3) 2019 vs. 2018 of Korea (계속)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계속)

[그림] 한국 2019년 감사 대상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의 사유 분포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감사의견 4개사 사유) 대규모 기업들도 재무제표 작성능력의 개선이 필요

- (부연 설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들은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사전적으로 구축하였음에도, 비적정 4개사의 사유 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은 4개사의 공통 사유였으며,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또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
- (제언) 차기 감사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함

[표] 한국 2019년 감사 대상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의 비적정 의견 사유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여부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비적정 의견 사유	핵심감사사항 관련 여부
A사	• 자산 손상평가 통제 미비	O
B사	• 자산 손상평가 통제 미비	O
C사	• 비용 인식 시점 통제 미비 • 금융상품 회계처리 통제 미비 • 충당부채 추정 통제 미비 • 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 통제 미비	O
D사	• 비용 인식 시점 통제 미비 • 리스 회계처리 통제 미비	-

(비적정 감사의견 4개사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4개사 중 3개사(75%)가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원인) 핵심감사사항의 특성상 경영진 검토통제(MRC^(주34)) 항목이 많아, 관련 취약점이 재무제표 수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주34) Management Review Control: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아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통제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3) 2019 vs. 2018 of Korea (계속)

② 재무제표 의견과의 비교^(주35)

[표10] 2019년 한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 기업 수 기준

(단위: 대상 회사 수 (전체 상장법인^(주36) 대비 비중))

구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계
		적정	비적정	
재무제표	적정	2,045 (96.2%)	29 (1.4%)	2,074 (97.6%)
	비적정	6 (0.3%)	46 (2.2%)	52 (2.4%)
총계		2,051 (96.5%)	75 (3.5%)	2,126 (100%)

[표11] 2018년 한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 기업 수 기준

(단위: 대상 회사 수 (전체 상장법인^(주36) 대비 비중))

구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계
		적정	비적정	
재무제표	적정	1,844 (96.8%)	22 (1.2%)	1,866 (98.0%)
	비적정	5 (0.3%)	34 (1.8%)	39 (2.0%)
총계		1,849 (97.1%)	56 (2.9%)	1,905 (100%)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간 관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이 비적정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한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 취약점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연 설명)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2018년에는 22개사였고 2019년에는 29개사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전망) 자산총액에 따라 감사 대상 회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주35) 삼정KPMG ACI Analysis

(주36) 각 연도 1월 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가 없거나 외부감사인인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제외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4) 2019 vs. 2018 of US

[표12] 미국 2019년 전년대 비교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미국, 2019		미국, 2018		증감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0	0%	0	0%	-	-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133	23.9%	138	28.2%	▼5	▼4.3%p
자금 통제 미비	5	0.9%	5	1.0%	-	▼0.1%p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7	3.1%	20	4.1%	▼3	▼1.0%p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15	2.7%	22	4.5%	▼7	▼1.8%p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118	21.2%	99	20.2%	▲19	▲1.0%p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8	1.4%	5	1.0%	▲3	▲0.4%p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0	0%	0	0.0%	-	-
법규 준수 미비	0	0%	0	0%	-	-
분개 통제 미비	21	3.8%	17	3.5%	▲4	▲0.3%p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2%	3	0.6%	▼2	▼0.4%p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109	19.6%	73	14.9%	▲36	▲4.7%p
업무 분장 미흡	70	12.6%	56	11.4%	▲14	▲1.2%p
부적절한 공시 통제	50	9.0%	38	7.8%	▲12	▲1.2%p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3	0.5%	7	1.4%	▼4	▼0.9%p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7	1.3%	7	1.4%	-	▼0.1%p
합계	557	100%	490	100%	▲67	-

(증가한 비적정 의견 사유) 2018년 대비 2019년에 미국에서는 ‘정보기술(IT) 통제 미흡’의 비중이 4.7%p 증가

- (원인)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IT 통제가 증가 추세에 있음
 - » 프로그램, 데이터의 접근 권한 통제나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
 - » Cloud Computing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 등에 영향^(주37)

(감소한 비적정 의견 사유)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부연 설명) 2018년 대비 2019년에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은 1.8%p 감소하였고 감사 원년 19.1%에 비하면 제도의 정착에 따라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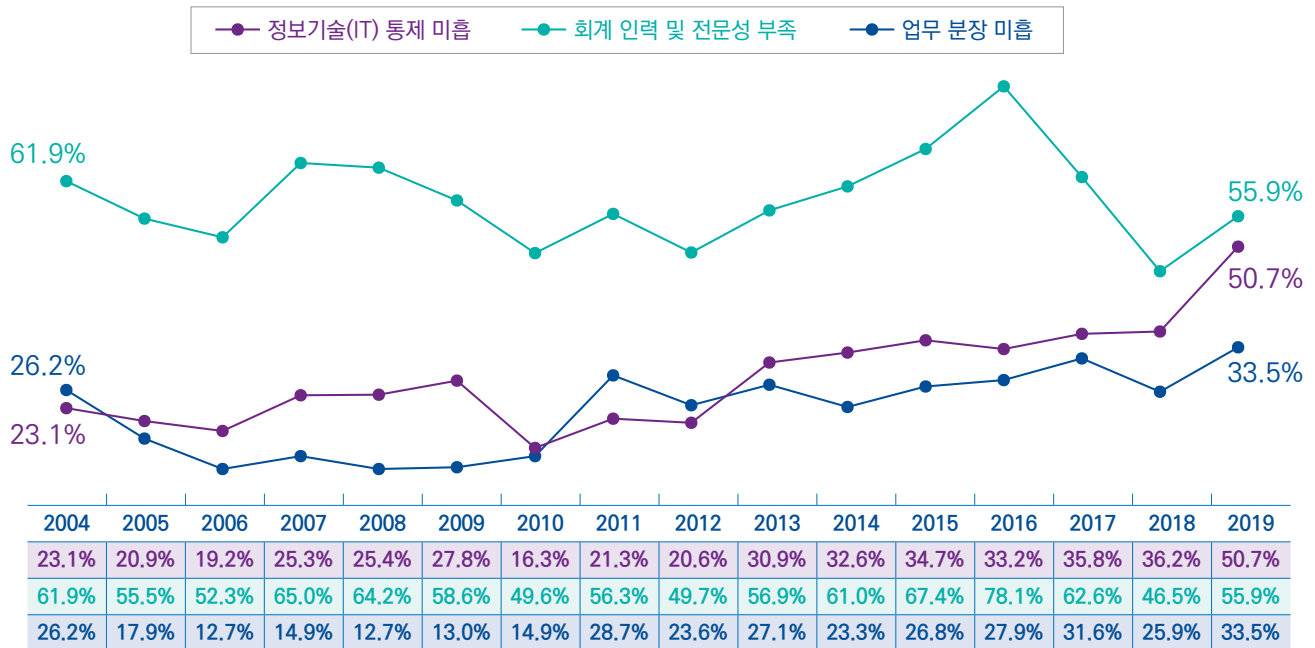
■ (주37) Cloud Computing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3년 \$590억, 2016년 \$1,140억, 2019년 \$2,080억으로 대폭 증가: Statista, "Total size of the public cloud computing market from 2008 to 2020", 2020.5

3.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분석 (계속)

(5) US(2004~2019)

“재무보고의 결과보다는 근본 원인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집중”(주38)

[그림8 & 표13] 미국 ICFR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 기업 비중(주39) ※ 기업 수 기준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19년에 전년 대비 14.5%p 상승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락을 반복하며 특정한 추세가 지속된 것은 아니나 16년 간 3개 사유 중 최상위 유지

(업무 분장 미흡)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변동 폭이 크지 않음

■ (주38) 재무보고의 결과와 관련된 사유: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

(주39) 미국 ICFR 비적정 감사의견 총 기업 수 및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별 기업 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적정 감사의견 총 기업 수	454	492	417	363	268	169	141	174	165	188	236	239	247	190	243	227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105	103	80	92	68	47	23	37	34	58	77	83	82	68	88	115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281	273	218	236	172	99	70	98	82	107	144	161	193	119	113	127
업무 분장 미흡	119	88	53	54	34	22	21	50	39	51	55	64	69	60	63	76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개요

-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 (2) 정보기술(IT) 통제 강화
- (3) 업무 분장, 공시 통제, 자금 통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고도화
- (4) 평가조직의 독립성 및 적격성 확보
- (5)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표14] 재무제표 작성능력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재무제표 작성능력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133	23.9%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15	2.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118	21.2%
분개 통제 미비	1	0.7%	21	3.8%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17	3.1%
부분 합계	59	42.8%	304	54.6%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총평) 재무제표 작성능력과 관련된 비적정 의견 사유는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부연 설명) 2019년에 국내 기업의 비적정 의견 사유 중 재무제표 작성능력과 관련된 사유는 42.8%(138개 중 59개), 미국은 54.6%(557개 중 304개)로 나타남

※ 관련 법규(주40)

- 회사는 IFRS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함 (중략)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
 - »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주40) 대표적인 법규만 우선 소개하였으며 세부 방안별 관련 법규는 해당 부문에서 개별 안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1

사전 재무제표 검토 불충분

- 최종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승인통제도 중요하나,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통제가 미흡함

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 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점의 경영진 검토통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함

2

재무제표 작성능력에 대한 보완 방안 부족

-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력 규모가 불충분하거나, 담당인력의 회계전문성이 미흡

CFO조직 구성 정비 및 전문성 확보

- 구성: 규모의 적정성, 팀 내 직급 분포, 업무 분장의 효과성 등
- 전문성: 유관 경험 및 자격, 교육·훈련, PA(Private Accountant: 회계법인이 기업 내부 회계업무를 자문하는 서비스) 활용 등 전문성 보완 방안, 승계 계획 등

3

회계처리규정 업데이트 미흡

- 회계처리규정이나 회계매뉴얼이 현행화되지 않아, 변경된 회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변경된 회계기준(예: IFRS16 리스 등)에 따른 신규 통제활동이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회계처리규정 적시 업데이트 체계 마련

- 특정 주기(예: 매 반기) 마다 또는 신규 회계기준 공표 후 특정기간 내(예: 분기) 반드시 회계처리규정, 회계매뉴얼, 관련 내부통제 등 업데이트 및 이에 대한 정기 검토

4

경영진 검토통제(MRC^(주41)) 감독 미흡

- 최종적인 검토 책임은 외부전문가가 아닌 경영진에 있다는 인식의 부족
- 추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 부족
- 경영진의 검토통제 내역이 충분히, 자세히 문서화되지 않음

MRC 감독을 위한 통제 설계·운영

- 외부전문가 활용 시에도 회사가 자체적인 검토 수행
- 추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성, 완전성 확보를 위한 통제활동 설계 및 운영
- MRC를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가정과 판단이 논리적인지, 예외사항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화

각 문제점 & 개선방안별 세부 분석은 다음 페이지부터...

■ (주41) Management Review Control: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아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통제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계속)

1

사전 재무제표 검토 불충분

- 최종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승인통제도 중요하나,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통제가 미흡함

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 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점의 경영진 검토통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함

[표15] 사전 재무제표 검토 불충분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사전 재무제표 검토 불충분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133	23.9%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 관련 법규

- 외부감사인 제출 기한 (외부감사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구분	제출기한
별도 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6주 전(주42)
연결 재무제표	IFRS 적용 회사
	IFRS 미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 4주 전(주43)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주44)

-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항)
- 상기 사항 위반 시 제재
 - 회사: 임원의 해임·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외부감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 회사 & 외부감사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반사실 공시 (외부감사법 제30조제1항제3호)
 - 관련 임직원 & 외부감사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감사법 제42조제1호)

※ 부연 설명



- (주42)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주43)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주44)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계속)

2

재무제표 작성능력에 대한 보완 방안 부족

-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력 규모가 불충분하거나, 담당인력의 회계전문성이 미흡

CFO조직 구성 정비 및 전문성 확보

- 구성: 규모의 적정성, 팀 내 직급 분포, 업무 분장의 효과성 등
- 전문성: 유관 경험 및 자격, 교육·훈련, PA(Private Accountant: 회계법인이 기업 내부 회계업무를 자문하는 서비스) 활용 등 전문성 보완 방안, 승계 계획 등

[표16] CFO조직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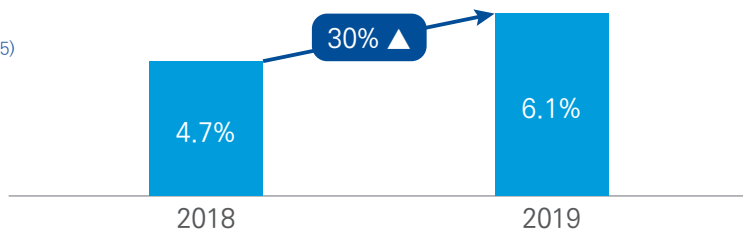
CFO조직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118	21.2%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 관련 법규

- 회사의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 및 직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음 (외부감사법 제6조제1항)
- 외부감사인인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됨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 상기 사항 위반 시 제재
 - » 회사: 최대 3개 사업연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 » 관련 임직원 & 외부감사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감사법 제42조제2호)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격성 있는 인력 및 외부서비스제공자를 선발, 육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41.3)

※ 관련 통계:

CFO조직 내 공인회계사 비중^(주45)



■ (주45) 삼정KPMG ACI Analysis,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대상, 사업보고서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계속)

3

회계처리규정 업데이트 미흡

- 회계처리규정이나 회계매뉴얼이 현행화되지 않아, 변경된 회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변경된 회계기준(예: IFRS16 리스 등)에 따른 신규 통제활동이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회계처리규정 적시 업데이트 체계 마련

- 특정 주기(예: 매 반기) 마다 또는 신규 회계기준 공표 후 특정기간 내(예: 분기) 반드시 회계처리규정, 회계매뉴얼, 관련 내부통제 등 업데이트 및 이에 대한 정기 검토

※ 관련 법규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함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은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고려해야 함. 또한 경영진은 회사의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회계원칙을 채택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43.1)

※ 비적정 의견 사유 사례: 한국

회사는 당기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리스채권, 리스부채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매출원가, 이자비용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1)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계속)

4

경영진 검토통제(MRC^(주46)) 감독 미흡

- 최종적인 검토 책임은 외부전문가가 아닌 경영진에 있다는 인식의 부족
- 추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 부족
- 경영진의 검토통제 내역이 충분히, 자세히 문서화되지 않음

MRC 감독을 위한 통제 설계·운영

- 외부전문가 활용 시에도 회사가 자체적인 검토 수행
- 추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성, 완전성 확보를 위한 통제활동 설계 및 운영
- MRC를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가정과 판단이 논리적인지, 예외사항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화

[표17] 경영진 검토통제(MRC)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경영진 검토통제(MRC)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17	3.1%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 관련 법규

- 유의한 계정과목 등 식별 시 고려할 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42) (중략)
 -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 및 평가
 - » 회계처리 상 복잡한 추정이나 판단을 요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계정과목(예: 판매보증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등)은 계산 오류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재무제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경영진은 특정 계정의 왜곡표시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음의 질적 요소를 고려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68) (중략)
 - 계정 특성
 - »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 및 평가

※ 비적정 의견 사유 사례: 한국

회사는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평가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가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활용한 외부 전문가의 손상평가 보고서 상의 할인율 및 미래현금흐름이 우리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 수행기간 도중 수정 되었으며, 이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가정 검증 등의 통제절차의 설계 미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및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관련 주식 등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 (주46) Management Review Control: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아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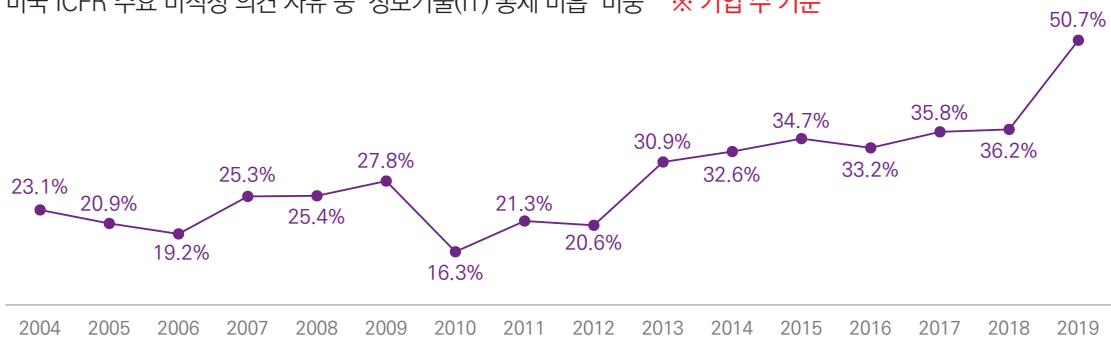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2) 정보기술(IT) 통제 강화

[표18] 정보기술(IT) 통제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정보기술(IT) 통제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9	19.6%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그림9] 미국 ICFR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 중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비중 ※ 기업 수 기준



(총평) 2019년에 국내 기업의 비적정 의견 사유 중 정보기술 통제와 관련된 사유는 전무하나, 미국은 5개 사유 중 1개 꼴로 IT 통제와 관련이 있음

- (부연 설명) 국내 기업은 IT 관련 리스크 파악 및 관련 통제 설계를 위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미국_원인)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IT 통제가 증가 추세에 있음
 - » 프로그램, 데이터의 접근 권한 통제나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
 - » Cloud Computing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 등에 영향(주47)
- (전망) 미국은 감사 도입 후 16년 간 정보기술 통제 미흡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도 IT 통제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가 증가할 것임

※ 관련 법규

- 경영진이 재무보고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식별한 통제들은 자동화되거나, IT기능에 의존하거나 수동 및 자동화된 절차의 결합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경영진은 평가 과정에서 자동통제 및 IT에 의존하는 통제와 함께 해당 IT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설계 및 운영을 고려함 (중략)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42)

■ (주47) Cloud Computing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3년 \$590억, 2016년 \$1,140억, 2019년 \$2,080억으로 대폭 증가: Statista, "Total size of the public cloud computing market from 2008 to 2020", 2020.5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2) 정보기술(IT) 통제 강화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1

회계 업무와 IT 업무 간 유기적 공조 미흡

- IT 전문인력이 있다해도 재무보고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경우는 희소
- 역으로, 재무보고를 위해 IT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업 부서 직원은 대개 IT에 대한 전문성 부족

회계-IT 분야 통합 전문가 육성 및 협업 체계 마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공학적 기반 위에 회계 및 IT 감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019년 말부터 융합 회계아카데미 운영 중
-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운영조직에 IT 전문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2

각 IT 리스크에 대응되는 통제의 식별 및 설계 미흡

- 위험 식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통제의 유무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강화

- 상급자에 의한 추가 검토·승인과 같은 수동 통제보다는 IT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ITAC^(주48)를 정확히 식별 후 이에 대응되는 ITGC^(주49)를 구현

3

IT 인프라 및 관련 조직에 대한 투자 부족

- 접근권한 관리(Super User 등), 개발운영 관리, 배치잡 관리 미흡
- 외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서비스 이용자(현업) 단위의 모니터링 통제 부족
-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Supporting Tool 등

IT 관련 업무 분장 정비 및 외부서비스제공업체 관리 강화

-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SOC 인증보고서^(주50) 발행
-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예: 감사 증거이 기록으로 남는 시스템 개발 등)

■ (주48) IT Application Control: 현업부서의 IT 통제로 Process Level의 자동화 통제이며 거래 처리, 계정과목, 경영진의 주장과 직접 연관됨

(주49) IT General Control: IT 부서의 통제로 거래 처리와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며(거래 자체보다는 ITAC에 연관) 계정과목, 경영진의 주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주50) SOC는 'Service Organization Control'의 약자로, SOC 인증이란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업무절차 및 내부통제가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는지 독립된 감사인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뜻함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3) 업무 분장, 공시 통제, 자금 통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고도화

[표19] 기본적인 내부통제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기본적인 내부통제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업무 분장 미흡	0	0%	70	12.6%
자금 통제 미비	23	16.7%	5	0.9%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50	9.0%
부분 합계	23	16.7%	125	22.4%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총평) 국내 기업은 ‘자금 통제 미비’의 비중이 높고 미국은 ‘업무 분장 미흡’, ‘부적절한 공시 통제’의 비중이 높는데, ‘업무 분장 미흡’은 다른 미비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잠재성이 크므로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 또는 감사되어야 함

- 예컨대, ‘자금 통제 미비’나 ‘부적절한 공시 통제’는 자금부서나 공시부서 내 또는 부서 간 ‘업무 분장 미흡’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
- 아직 한국에서는 명시적인 미비점 또는 취약점이 발생해야만 이를 비적정 의견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며, 미비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부통제상 특징만으로는 비적정 의견이 제시되기 어려움
 - » 그러나 향후에는 내부통제 환경이 미비한 경우에도 비적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비적정 의견을 받는 국내 기업 비중도 증가할 전망

※ 관련 법규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함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제5호)
- 권한과 책임의 정의, 부여 및 제한 - 경영진과 이사회는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정의하며 적절한 프로세스와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다양한 수준의 필요성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고 업무를 분장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40.3)
- (중략) 업무분장은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록, 거래 승인 및 관련 자산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는 것을 뜻하며, 경영진의 통제 무시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중략) 또한 업무분장은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 거래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고,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을 증가시킴 (중략)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A57)
- 경영진은 공시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계정과 공시사항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54)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3) 업무 분장, 공시 통제, 자금 통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고도화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1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분장

- 동일한 통제운영자가 양립불가능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예: 출납과 기록)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업무 분장 명확화 및 견제 장치 마련

- 거래의 기록, 거래 승인, 자산의 보관에 대한 각 책임을 분리
-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의 거래를 수행하거나 검토

2

자금의 입·출금, 대여 등에 대한 승인 절차 미비

- 예1: 적격 증빙을 통한 집행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자금이 집행되고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 예2: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사용 기록 관리 미흡
- 예3: 자금의 대여 및 조달에 관한 이사회 등의 부적절한 사전승인

현금성 자산에 대한 엄격한 감독

- 업무 분장을 부서별 규정에 명문화
- 자금 지출에 대한 승인 및 통제 강화
 - » 자금 지출은 담당자 외 독립적인 제3자가 승인 또는 대서함
 - » 경영진(또는 팀장)은 중요한 자금 이체 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함
 - » 법인인감에 대한 엄격한 관리

3

공시자료 제출 시기 준수에 초점을 두어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소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표하는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시의무 위반이 지연제출에 관한 것임

공시자료 작성·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확보 및 공시 제도 변화 모니터링

- 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 제출기한 직전 급박한 검토나 예상치 못한 수정 방지
- 공시서식 개정 등 공시 제도 변화에 대해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성 확보
- 공시 전담 인력 확충이 어려운 경우 PA 활용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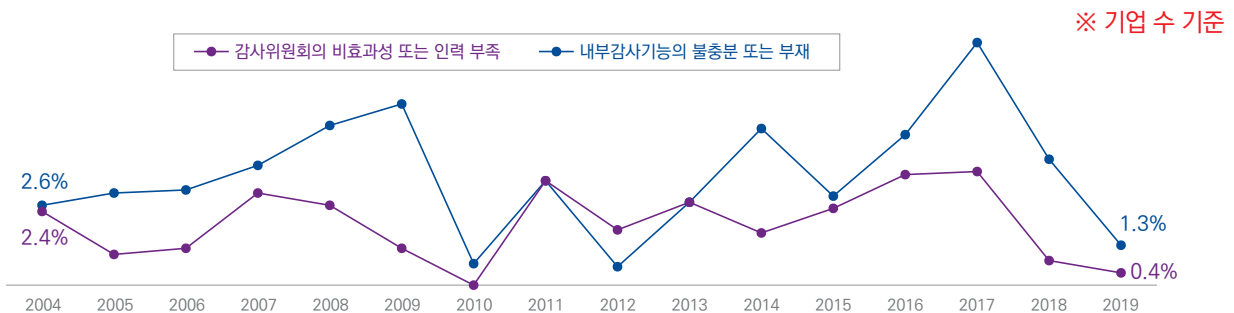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4) 평가조직의 독립성 및 적격성 확보

[표20] 내부감사기구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Korea vs. US in 2019 ※ 사유 개수 기준

내부감사기구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1	0.2%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3	0.5%
부분 합계	1	0.7%	4	0.7%
(생략)				
합계	138	100%	557	100%

[그림10] 미국 ICFR 비적정 의견 사유 중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비중



(총평) 내부통제 관련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내부감사기능)의 미흡은 미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명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취약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검토 또는 감사의 중점영역이 아니었음

- 미국은 2004년 이래 16년동안 내부감사기구 관련 비적정 의견 사유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국내에서 동 비중이 낮은 것은 내부감사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부감사기구의 미흡을 비적정 의견의 근거로 삼기에는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임

※ 관련 법규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 (필요 시 시정 의견 포함)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함 (외부감사법 제8조제5항)
-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는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임 (회계감사기준 1100 A8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83)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96)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4) 평가조직의 독립성 및 적격성 확보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독립성 및 적격성 부족

- 회계정보를 생성하는 조직이 평가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 많음
- 평가조직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불충분

2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이 형식적인 경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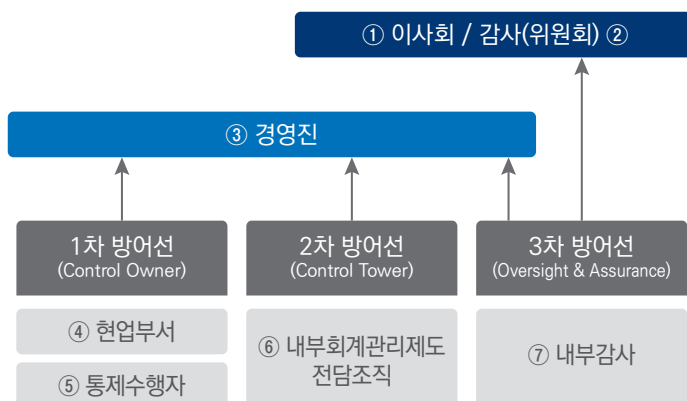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 부재 또는 불충분
- 감독 지원조직이 있어도 권한 미확보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에 의한 관리 한계

감사(위원회) 산하 내부감사부서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내부감사부서가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직접 보고
- 내부감사책임자 임면권,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권 등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함

문제점 &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 페이지부터...

[그림11] 이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조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감독 책임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최종적인 책임, 운영실태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
- ④ 통제활동 설계 및 변화관리, 미비점 개선방안 수립, 개선결과 보고
- ⑤ 통제활동 운영(수행), 통제활동 변화 파악 및 보고
- ⑥ 위험 평가, 설계 및 운영 평가, 미비점 평가 및 사후 관리
- ⑦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 지원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4) 평가조직의 독립성 및 적격성 확보 (계속)

※ 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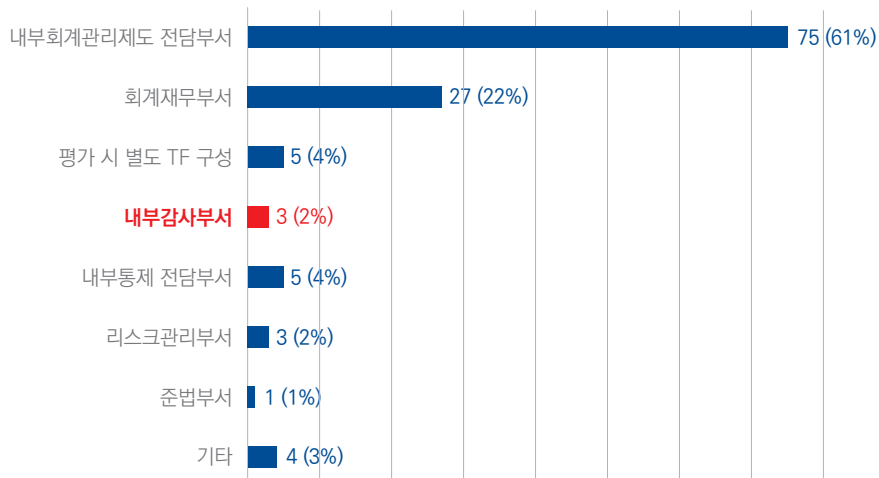
- 회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16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수행')
 - »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업무처리 과정의 일부 절차로 일상적으로 수행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방식 (동 기준 A97)
 - » 독립적인 평가는 내부의 객관성을 가진 인력 또는 외부인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평가의 범위와 빈도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름 (동 기준 A97)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때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문단96)
- 감사(위원회)는 외부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역할, 책임 및 위임 규정을 수립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11)^(주51)

(중략)

 - »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을 포함한 조직,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예산 및 보고의 적절성, 내부감사부서의 주요 업무 활동 및 결과

※ 관련 통계 1: 국내 주요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유형^(주52)

- 담당조직을 보유한 123개사 중 75개사(61%)가 전담부서 보유
 - » 전년 71개사 중 39개사(55%) 대비 6%p 증가
- 123개사 중 3개사(2%)만이 내부감사부서



■ (주51)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 외 다른 내용도 많으나 여기서는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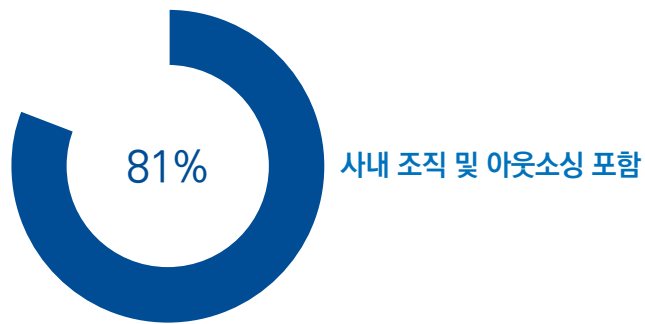
(주52)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Who Operates K SOX Program? - 2nd Survey Report", 2020.6: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4) 평가조직의 독립성 및 적격성 확보 (계속)

※ 관련 통계 2: 미국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여 현황^(주53)

- 미국은 주요 기업의 81%에서,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



※ 관련 통계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지원조직이 내부감사부서인 경우,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보유 여부^(주54)

-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인 내부감사부서 중 31%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경영진 보고라인 보유
 - » 인사권과 성과평가권은 각각 31%, 100% 미공시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이
내부감사부서인 기업
51개사

보고라인	경영진	16개사	31%
	감사위원회	35개사	69%
인사권	미공시	16개사	31%
	권한 보유	12개사	24%
	협의	16개사	31%
	보유 & 협의	2개사	4%
	신분만 보장	9개사	18%
성과평가권	모두 미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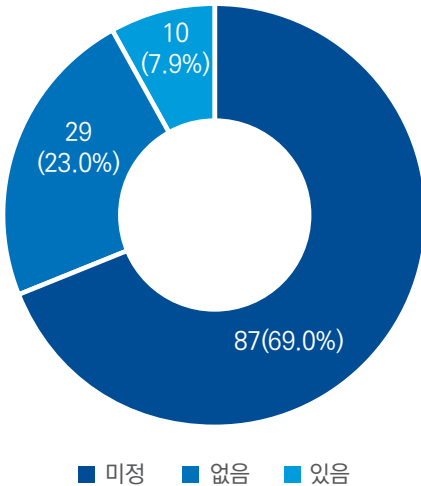
■ (주53) KPMG, "2018 Internal Controls Survey", 2018

(주54)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Who Operates K SOX Program? - 2nd Survey Report", 2020.6: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5)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

[그림1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별도 담당조직 구성 여부^(주55)



(총평) 국내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별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아직 희소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별도 담당조직 구성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 답한 기업의 비중이 약 70%
 - » 이는 대개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동일 조직이 담당하기 때문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별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10개사에 불과
 - » 이 중 7개사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그 계열사로, 2022년 국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대한 대비 자체는 미흡

※ 관련 법규

- 모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
-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대상	적용 사업연도
모회사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22년
모회사 별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	2023년
상장법인 전체	2024년

※ 비적정 의견 사유 사례: 미국

완전 자회사 C社와 비완전 자회사 U社의 고정자산 손상 평가 및 추정에 대한 검토가 비효율적이었다.

당사의 자회사 B社의 회계처리 플랫폼과 전반적인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가 부족하였다.

최근 인수한 자회사의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주56))와 관련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회사의 ITGC는 부적절한 사용자 접근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 (주55)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Analysis,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주56) IT General Control: IT 부서의 통제로 거래 처리와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며(거래 자체보다는 ITAC에 연관) 계정과목, 경영진의 주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계속)

(5)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1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미흡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표준화 수준 저조
- 내부신고제도 등이 회사별로 괴리되어 운영

모회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관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 그룹 차원 윤리강령 제정 및 공표
- 모회사 내부신고 채널을 자회사 임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영문화 포함)
- 연결 회계정책 공유, 연결 결산 일정 공지

2

연결 재무제표 관점에서 유의적인 부문 식별의 어려움

- 특정 양적·질적 기준을 마련하여도 국내외 모든 자회사에 일괄 적용 어려움

모회사가 유의적인 부문 식별을 위한 보편적·합리적인 원칙 수립 및 이행

- 예: 신규 취득하였거나 과거에 지속적으로 미비점이 존재하였던 자회사는 Scope-in

3

의견 변형 가능성 증가

- (모회사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수 자회사의 미비점이나 특정 자회사의 중대한 취약점으로 인해 모회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 증가

모회사-자회사 간 협업 및 소통 제고

- 모회사-자회사 간 보고체계 강화 (자회사 미비점에 대한 보고 빈도 및 보고내용 확대 등)
- 그룹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가 속한 각 국가의 법제도, 감사 강도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사 및 관리

4

모회사-자회사 간 역할 또는 권한 상충

- 예: 자회사가 자료나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접근 또는 조사 권한 미보유

그룹 차원 규정에 모회사-자회사 간 R&R 정립

-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와, 자회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 상황별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내부통제 담당조직, 경영진,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명문화

[별첨1] 비적정 의견 사유 전체

[표21] 2019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주57) , 2019		미국, 2019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45	32.6%	0	0%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133	23.9%
자금 통제 미비	23	16.7%	5	0.9%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17	3.1%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15	2.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118	21.2%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5	3.6%	8	1.4%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3	2.2%	0	0%
법규 준수 미비	2	1.4%	0	0%
분개 통제 미비	1	0.7%	21	3.8%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1	0.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9	19.6%
업무 분장 미흡	0	0%	70	12.6%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50	9.0%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3	0.5%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0	0%	7	1.3%
합계	138	100%	557	100%

[표22] 2019년 韓 vs. 2004년 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주57) , 2019		미국, 2004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45	32.6%	24	1.8%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261	19.5%
자금 통제 미비	23	16.7%	7	0.5%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94	7.0%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255	19.1%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238	17.8%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5	3.6%	33	2.5%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3	2.2%	23	1.7%
법규 준수 미비	2	1.4%	6	0.4%
분개 통제 미비	1	0.7%	56	4.2%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11	0.8%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05	7.9%
업무 분장 미흡	0	0%	119	8.9%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2	0.1%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12	0.9%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0	0%	90	6.7%
합계	138	100%	1,336 ^(주58)	100%

■ (주57)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주58) 문서화 미흡,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조사 등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되거나 국내 기업 비적정 의견 사유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제외

[별첨1] 비적정 의견 사유 전체 (계속)

[표23] 韓 2019년 vs.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 사유 개수 기준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주59) , 2019		한국, 2018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45	32.6%	21	22.6%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26	18.8%	14	15.1%
자금 통제 미비	23	16.7%	21	22.6%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8	13.0%	9	9.7%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7	5.1%	9	9.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	5.1%	2	2.2%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5	3.6%	8	8.6%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3	2.2%	3	3.2%
법규 준수 미비	2	1.4%	0	0.0%
분개 통제 미비	1	0.7%	0	0.0%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7%	0	0.0%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0	0%	1	1.1%
업무 분장 미흡	0	0%	2	2.2%
부적절한 공시 통제	0	0%	3	3.2%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0	0%	0	0%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0	0%	0	0%
합계	138	100%	93	100%

[표24] 美 2019년 vs.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 사유 개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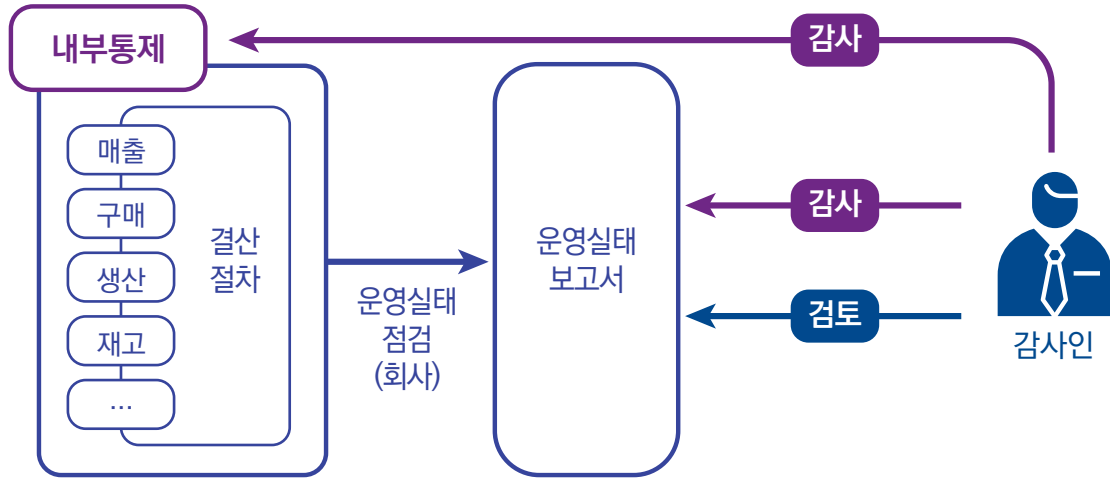
비적정 의견 사유	미국, 2019		미국, 2018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범위 제한	0	0%	0	0%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133	23.9%	138	28.2%
자금 통제 미비	5	0.9%	5	1.0%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7	3.1%	20	4.1%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15	2.7%	22	4.5%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118	21.2%	99	20.2%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8	1.4%	5	1.0%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0	0%	0	0%
법규 준수 미비	0	0%	0	0%
분개 통제 미비	21	3.8%	17	3.5%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또는 인력 부족	1	0.2%	3	0.6%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109	19.6%	73	14.9%
업무 분장 미흡	70	12.6%	56	11.4%
부적절한 공시 통제	50	9.0%	38	7.8%
내부감사기능의 불충분 또는 부재	3	0.5%	7	1.4%
기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정정	7	1.3%	7	1.4%
합계	557	100%	490	100%

■ (주59)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71개사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개사를 합산한 75개사 기준

[별첨2] ‘검토’와 ‘감사’의 차이^(주60)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는 검증 대상과 그 수행 절차에 있음

[그림1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검증 대상 차이



[표2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

구분	검토 (한국, 감사제도 단계적 도입 중 ^(주61))	감사 (미국)
목적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제공함. 소극적 확신은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경영진의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문단5.2)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얻기 위한 것임 (회계감사기준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문단5)
검증 대상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한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설계와 운영)
수행 절차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로 검증을 수행	내부통제 관련 문서검사, 통제절차 재수행, 관찰, 질문 등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

■ (주60)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14

(주61)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

적용 대상	적용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19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2020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2022년
상장법인 전체	2023년

[별첨3]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부정 사례

사례 1: 와이어카드 분식회계 사건

기업 개요

wirecard

- 설립: 1999년 1월 / 국적: 독일 / 업종: 전자결제
- 시가총액: 약 32조원 (2019년 초) → 약 1,500억원 (2020년 9월)
- 기타: '독일의 엔론 사태'로 지칭, 2018년 중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시가총액을 초과한 적 있음

사건 개요

- 2019년 • 내부고발을 통한 회계부정 의혹 제기
- 2020년 6월 • 외부감사인이 와이어카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현금 19억 유로가 계좌에 없음을 발견
- 6월 • CEO 사퇴 및 체포
- 6월 • 법원에 파산 신청
- 7월 • 유럽연합(EU)의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독일의 감독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개시

분식 규모

약 2조 6,000억원의 현금

분식 방법

- 두바이와 아일랜드에서의 매출 및 이익 과대 계상
- 필리핀 소재 은행에 19억 유로의 현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 조작
- 소위 'Round-tripping'으로 불리는 사전에 공모한 허위 거래

내부통제 이슈

1. 이사회 구성원들의 산업 전문성 부족과 구성상 다양성 저조,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미설치^(주62)
2.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부통제인 잔액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3. Compliance팀 인원이 20명 남짓으로, 전체 임직원의 0.4%에 불과 (HSBC는 6,000여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2.6%)^(주62)
4. '성장'에 초점을 맞춘 조직 문화^(주62)
5. 독일의 이원화 이사회(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체계 하에서, 감독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았으나 업무를 소홀히 함^(주63)

■ (주62) Forbes, "Wirecard Fraud Is Risk Management Lesson For Fintech Companies", 2020.7.14

(주63) CNBC, "The Enron of Germany": Wirecard scandal casts a shadow on corporate governance", 2020.6.29

[별첨3]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부정 사례 (계속)

사례 2: 루이싱커피 분식회계 사건

기업 개요



- 설립: 2017년 10월 / 국적: 중국 / 업종: 커피 체인
- 점포 수: 1,300개 (2018년 10월) → 3,680개 (2019년 9월)
- 기업 공개: 2019년 5월 NASDAQ 상장, 2020년 6월 상장폐지
- 기타: 소위 '중국 스타벅스'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음

사건 개요

2020년	
1월	리서치회사 Moody Waters가 루이싱커피의 분식 최초 주장
4월	내부조사 후 COO의 분식 가담 사실 공표, 미국 상장시장에서 주식 거래 정지
5월	CEO·COO 사퇴, 중국 기업이 미국 법규 미준수 시 상장폐지 등 조치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주64) 상원 통과
6월	NASDAQ에서 상장폐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 ^(주65) 공표
8월	미국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감사 자료를 PCAOB에 제출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상폐하는 제도 도입 계획 발표

분식 규모

2019년 매출 약 3,700억원

분식 방법

- 매장당 하루 커피 판매량 과대 계상
- 주문 1건당 커피 판매량 과대 계상
- 커피 판매가격 과대 계상
- 매장의 거짓 흑자를 숨기기 위한 광고비 과대 인식
- 부가세 신고서를 통해 검토한 결과, 커피 외 다른 상품의 매출도 허위

내부통제 이슈

1. 경영진의 의도적인 부정에 대한 통제 미흡 (건제 장치 부재 등)^(주66)
2. 보고라인에 대한 통제 미흡 (CEO와 COO가 부정을 저지르는 데 일조한 직원들)^(주67)
3. (외부 요인)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 미흡: 중국의 회계법인은 중국 법률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즉 PCAOB^(주68)가 중국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면밀히 감독하는 데 한계

■ (주64) 미국 상원,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2020.5.21

(주65) 미국 정부, "Memorandum on Protecting United States Investors from Significant Risks from Chinese Companies", 2020.6.4

(주66) China-Briefing, "How to Spot a Luckin Coffee Type Fraud in China", 2020.4.28

(주67) Luckin Coffee, "[Press Release] Luckin Announces the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Internal Investigation", 2020.7.1

(주68)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미국 기업에 대해 수행된 외부감사의 품질과 적정성을 감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비영리기관

[별첨4] 미국 소규모 기업에 대한 ICFR 감독 완화 동향^(주69)

- 미국에서는 약 10년에 걸쳐 소규모 기업의 ICFR에 대한 감독 완화가 논의되어 왔고, 금번 1934년 증권거래법 Rule 12b-2 개정으로 감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그림14] 미국 소규모 기업에 대한 ICFR 감독 완화 추이

소규모 기업 감사 유예^(주70)	Non-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500만 미만 • 시가총액 \$7,500만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ICFR 감사 의무를 2009.12.15 이후 결산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2010.6.15 이후 결산으로 유예됨
소규모 기업 감사 폐지^(주71)	Non-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500만 미만 • 시가총액 \$7,500만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유예되었던 ICFR 감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면제됨
소규모 기업의 범위 확대^(주72)	Smaller Reporting Company(SRC) & Non-Accelerated Filer : 연 매출 기준 추가 • 기존에는 시가총액이 \$7,500만 미만이어야 Non-Accelerated Filer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가총액이 \$7,500만 이상이어도(단, \$7억 미만) 연 매출이 \$1억 미만이면 Non-Accelerated Filer로 분류되어, ICFR 감사 면제 대상으로 편입 • 2020.4.27 이후를 결산일로 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적용 가능

[표26] Smaller Reporting Company(SRC)와 (Non-)Accelerated Filer에 대한 정의

구분	개정 전 ^(주73)		개정 후	
	시가총액	연 매출	시가총액	연 매출
SRC and Non-Accelerated Filer	\$7,500만 미만	N/A	\$7,500만 미만	N/A
			\$7,500만 ~ \$7억	\$1억 미만
SRC and Accelerated Filer	\$7,500만 ~ \$2억 5,000만	N/A	\$7,500만 ~ \$2억 5,000만	\$1억 이상
	\$2억 5,000만 ~ \$7억	\$1억 미만		
Accelerated Filer (not SRC)	\$2억 5,000만 ~ \$7억	\$1억 이상	\$2억 5,000만 ~ \$7억	\$1억 이상
Large Accelerated Filer (not SRC)	\$7억 이상	N/A	\$7억 이상	N/A

■ (주69)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1에 소개될 당시에는 개정안이었으나 현재는 개정이 확정됨

(주70) SEC, "RELEASE NOS. 33-9072; 34-60813; File No. S7-06-03", 2009.10.13

(주71) SEC, "RELEASE NOS. 33-9142; 34-62914", 2010.9.15

(주72) SEC, "Accelerated Filer and Large Accelerated Filer Definitions", 2020.4.23

(주73) SEC, "Release No. 34-85814; File No. S7-06-19", 2019.5.9,



삼성KPMG K SOX 전문조직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E. eunsuphan@kr.kpmg.com

김유경 전무이사 (K SOX 전문조직 리더)

E. youkyoungkim@kr.kpmg.com

한상현 전무이사 (K SOX 전문조직 부 리더)

E. sanghyunhan@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K SOX 전문조직 간사)

E. jshim@kr.kpmg.com

이종우 전무이사

E. jongwoolee@kr.kpmg.com

이주한 전무이사

E. juhanlee@kr.kpmg.com

정현 상무이사

E. heonjung@kr.kpmg.com

박상옥 상무이사

E. sangokpark@kr.kpmg.com

조정래 상무이사

E. jjoh@kr.kpmg.com

신광근 상무이사

E. kwangkenshin@kr.kpmg.com

전현호 상무이사

E. hyunhojeon@kr.kpmg.com

지동현 상무이사

E. dchi@kr.kpmg.com

황구철 상무이사

E. khwang@kr.kpmg.com

윤주현 상무이사

E. joohunyoonyoon@kr.kpmg.com

박상욱 상무이사

E. sangwookpark@kr.kpmg.com

김연정 상무이사

E. yeonjungkim@kr.kpmg.com

정양기 상무이사

E. yangkijung@kr.kpmg.com

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처

엄수진 책임연구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E. sujineom@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